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: <b>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</b>	토지관리과장	박희영	02-2133-4660
	부동산관리팀장	오경미	02-2133-4674
사진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진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수 : 4쪽	담 당 자	서미해	02-2133-4675

### 서울시, 공인중개사협회 손잡고 "불법중개행위 뿌리 뽑는다"

- 오세훈 시장 참석, 25일(목) 14시 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- 불법 의심 공인중개사 사전 차단을 위한 신속한 대응반 신설
-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‘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‘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실시 예정

- 서울시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·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‘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’을 마련,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대책은 ‘예방’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. 구체적으로, ① 서울시-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② ‘부동산 불법행위 지도·점검 신속 대응반’ 신설 ③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.
- 먼저,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「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」을 맺었다. 25일 14시 시청 영상회의실(6층)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,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다. 앞으로 시와 협회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,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방침이다.

- **협약의 주요 내용은 ▲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▲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▲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.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.**
  -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(서울시 회원 공인중개사 25,482명)는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서울시 신속 대응반에 신고하면, 서울시는 신속하게 현장 지도·점검을 추진하여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신속하게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.
  
- **아울러, 시는 ‘부동산 불법행위 지도·점검 신속 대응반’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.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·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,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.**
  
- **또한,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에 집중되는 만큼, 전문가와 함께 ‘찾아가는 상담센터’를 운영하고,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‘부동산 계약 체험하기’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.**
  - ‘찾아가는 상담센터’는 하반기부터 대학가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하며,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.
  - 온라인에서는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‘메타버스 서울’을 통해 9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.
  
- **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“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”이라며 “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” 라고 덧붙였다.**



사진설명: (좌측부터) 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,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, 오세훈 서울시장,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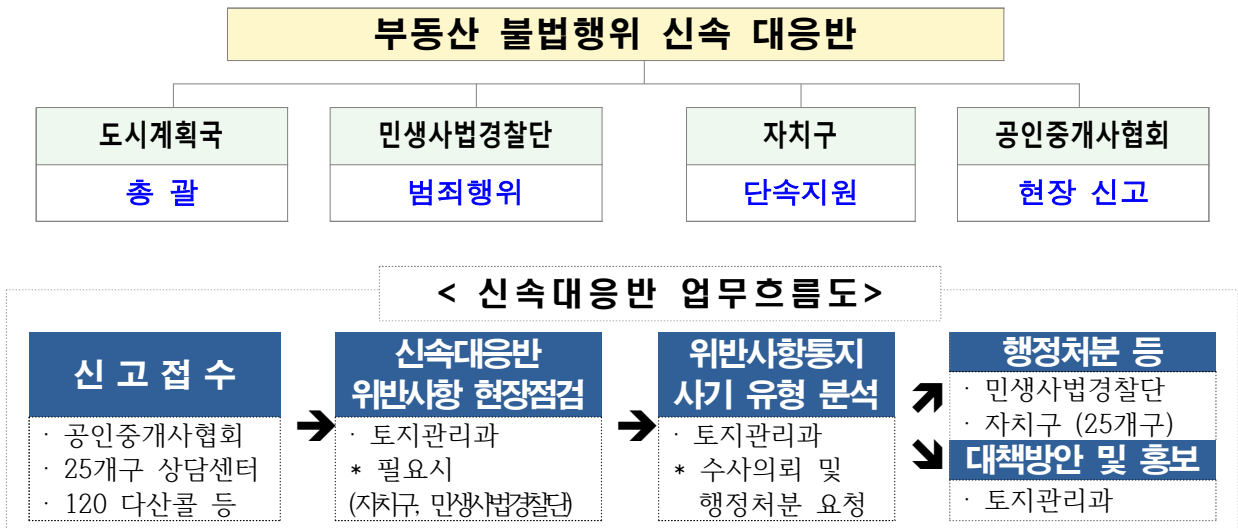
사진설명: 서울특별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약식 체결 모습

① 전세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자정 노력 및 역할 강화

- (서울시) 부동산중개 관련 법·제도의 변경사항 및 직업 윤리 교육 강화
- (협 회) 부동산 투기 금지, 허위 광고 및 과대 광고 금지 등 자정 결의

② 집값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 방지 및 위반 중개행위 신고·조사요청

- (서울시)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·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



- (협 회) 전세사기 의심 업체 및 무자격자 중개행위 발견 시 신고  
신중 사기 수법 등 현장 발견 시 즉시 신고

③ 무등록 중개업소 퇴출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확인제 추진

- 중개업무 시 본인이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중개의뢰인에게 사전고지
-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 시 중개보조원임을 사전고지

④ 저소득층 중개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

- 저소득층 중개보수 재능기부 공인중개사 홍보 확대 등

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제도개선 추진